



교직원복지지원 규정

제정일	2014. 5. 1
개정일	2024. 3. 1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전임교원
2. 직원 (개정 2021.10. 1)
3. 조교 (개정 2021.10. 1)

제 3조 (복지지원의 유형) 복지지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입학하는 교직원 직계자녀의 등록금 지원
2.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 가족수당 지원
3. (삭제 2021.10. 1)
4. 교직원의 급식비 지원
5.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6. 장기근속자 포상
7.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에 대한 포상
8. 장기근속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9. 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10. (삭제 2024. 3. 1)
11.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가족의 본교 평생교육원 운영 교육과정 수강료 지원
1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경차 소유 교직원의 본교 정기주차료 지원
1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교직원 격려금 지원 (개정 2024. 3. 1)
14. 교직원 출장, 교육훈련 및 직무연수 관련 경비 지원
1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지원

제 4조 (지원기준 및 시기) 복지지원의 기준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 직계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규정 제8조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한다.
2.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지원한다.
3. (삭제 2021.10. 1)
4. 교직원의 급식비의 경우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지원한다.
5.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
6.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교직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에 따라 포상한다.
7.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에 따라 포상한다.
8. 장기근속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는 교직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원한다.
9. 교직원 동호회 활동의 경우 교육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한하여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
10. (삭제 2024. 3. 1)

11.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가족의 본교 평생교육원 운영 교육과정 수강료는 매 학기 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시 지원 범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1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교직원의 경우 본교 정기주차료를 전액 지원하고, 경차 소유 교직원은 정기주차료의 50%를 지원한다.
1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교직원 격려금은 매년 1회 지급한다. (개정 2024. 3. 1)
14. 교직원 출장, 교육훈련 및 직무연수 관련 경비는 여비규정 제4조~제6조에 따라 지원한다.
15. 기타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 5조 (예산)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